

 보건복지부		<h1>보 도 자 료</h1> <h2>11월 4(목) 위원회 시작(15:00) 이후 보도</h2>	
배 포 일	2021. 11. 4 / (총 7매)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과 장	한 상 균	전 화	044-202-2510
담 당 자	박 성 민		044-202-2505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추모시설, 합천군 건립추진

-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개최(11.4)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함(붙임1 참고)

(권덕철) 11월 4일()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에서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설치·운영

○ 안전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연구와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모 시설 설립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각 안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 >

*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7~'20.3)

공공자료원* 분석 결과, 원폭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서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건강실태가 나타났다.

* 건강보험청구자료, 국가암등록자료, 사망등록자료 등

- 및 자녀의 , 대장암 등의 발생률과 피해자 자녀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과 정신신경계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갑상선 질환, 만성비염·인두염·부비동염, 피부질환, 두통, 기분장애, 신경증상·스트레스 연관 신체형장애 등

- 또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 원폭피해자 자녀가 일반인구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래이용률이 높았다.

* (연구한계)①생존자만 분석하여 원폭노출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②흡연·음주 등의 혼란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것, ③한정된 표본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

- 피해자 자녀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피해자자녀 38.2% > 일반인구집단 16.4%, ** 피해자자녀 18.3% > 일반인구집단 8.6%

- 실태조사 제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피폭과 질병의 인과성 및 유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분석 연구」, '20년부터 5년간 진행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중)

<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보고 >

*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20.5~'20.11)

-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관련 연구는 원폭피해자법(14조)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원폭피해자법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붙임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정의

□ 원자폭탄 피해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붙임 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 원폭피해자 등록현황 (2021. 6. 30 기준, 대한적십자사)

○ 전체 인원

구 분	전체인원	생존자	사망자
인 원	4,404	2,043	2,361

○ 지역별 현황

- 인원현황 : 2,043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196	457	295	38	5	27	31	11	171
경남	경북	합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제주
316	115	311	12	17	17	13	2	9

○ 연령별/성별 현황

연령	성별		계
	남	여	
71~75세	32	26	58
76~80세	422	510	932
81~85세	248	412	660
86~90세	86	196	282
91~95세	19	70	89
96~100세	6	14	20
101~105세	1	0	1
106~110세	1	0	1
계	815	1,228	2,043

※ 평균연령 : 81.6세(회관입소자 : 84.5세)

붙임 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현황(한국정부/일본정부)

(2021.06.30.)

구분	한국정부	일본정부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 2,043명 - 건강수첩 소지자 : 1,994명 - 건강수첩 미소지자 : 49명	- 건강수첩 소지자 : 1,994명
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진료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건강수첩 소지자에 1) 연간상한액(30만엔, 약 342만원) 이내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전액 지원 2) 연간상한액 초과할 경우 일 본의료수가 재산정하여 지원
장제비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21년 기준 장제비 150만원 지원	건강수첩 소지자에 '21.6월 기준 장제비 209천엔 (약 210만원) 지원
건강검진비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연1회 35만원 지원	건강수첩 소지자에 연1회 35만원 지원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전원에 매월 10만원 지원 (단, 회관 입주자는 5만원 지원)	-
원호수당	-	4종 중 1종 수령 의료특별수당(142,170엔, 약 145만원), 특별수당(52,500엔, 약 53만원), 건강관리수당(34,970엔, 약35만원), 보건수당(17,540엔, 약 17만원) 중 질병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합천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 (국비 연 18억원)	-
도일 치료 일본의료기관 방문)	-	희망자에 한해
관련 근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원호법) 재한원폭피해자지원사업 등 업무협약
연간소요액('21)	48억원	212억원

- 1) 일본정부는 1990년 한일 정상간 합의에 의해 재한 원폭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40억 엔) 출연, 2003년 대한적십자사와 일본정부간 협약에 따라 재한 원폭 피해자 중 피폭자 건강수첩(일본 정부 발행) 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등 지원 중
- 2) 우리나라는 피해자 중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장제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수첩 소지자는 진료보조비, 합천복지회관 이용 등 지원 중

붙임 4

한·일 정부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경과

- (1973.12) 설치(합천군, 진료소장 : 보건소장)
* 핵병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일본시민단체) 기부
- (1979.6.25.) 한·일 정부 의료원호에 관해 합의(피폭자의 도일치료)
* 치료비는 일본정부, 도일경비는 한국정부 부담, '80~'86 기간동안 총 349명 실시
- (1986.10) 한국정부 국내치료사업 시작(정부부담 90%/본인부담 10%, 60만원 한도)
- (1990.5) 한·일 정상회담, 일본정부 재한 원폭피해자복지기금 40억엔 출연 합의(일본정부 40억엔(248억원)을 2회('91, '93)에 걸쳐 출연)
- (1991.11)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사업* 시작
*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등
- (1993.6) 대한적십자사 원폭복지사업소 개소
- (1996.10)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개관(입주자 생활편의 지원)
- (2002.6) 일본, 재외피폭자도일지원사업 실시(피폭자에 대한 건강수첩발급 및 치료지원)
- (2008.12) 일본 원호법 개정으로 피폭자 건강수첩 국내신청 가능
- (2009.4)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증축(입주정원 80명→104명)
- (2016.1) 일본거주 원폭피해자와 동일한 의료비 지원(연간 상한액 폐지)
- (2017.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 국내 원폭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추모에 필요한 기념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함
- (2017~2019) 제1~3차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개최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 특별법 개정방향 검토 등